

생태윤리의 수용과 행정학적 함의: Aldo Leopold의 생애와 대지윤리를 중심으로

이도형*

자연에 대한 도구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보니 자연은 줄곧 인간의 정복, 개발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에 따른 자연의 대반격이 위험의 부메랑이 되어 다가오면서 위험사회적 속성은 더 커진다. 생태학적 세계관에선 인간도 수많은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인과적 그물망의 연관관계로 맺어진 자연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생태공동체적 시각에서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생태윤리 수용은 불가피하다. 이 글에선 도구적 자연관 아래 한때 공리주의를 신봉했던 미국의 산림공무원 Leopold가 오랫동안 자연과 접하고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생태친화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이후 대표적 생태철학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배려대상을 대지공동체에까지 확장한 계기 등 그의 인생역정을 하나의 사례로 다루며, 그가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을 통해 대지윤리라는 생태윤리를 확립하게 된 인식전환 과정을 분석해 생태윤리 수용의 보편적 필요성을 이해했다. 또 그의 생태학적 인식전환과 대지윤리가 주는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공무원 생태윤리의 수용 및 실천방향도 간략히 모색했다.

주제어: 자연에의 윤리확장, 공무원 생태윤리, Leopold의 대지윤리

I. 머리글

자연에 대한 도구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보니 자연은 줄곧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 생태의식이 싹트고 생태적 가치학습이 시작됐지만, 경제위기가 대두하면 다시 성장론이 득세하며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관 아래 성장,

*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비교발전행정, 인사행정 등이다(ledoh@ut.ac.kr).

개발 가치가 힘을 얻고 난개발은 반복된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과 그 연장선상에서 생태윤리¹⁾의 수용은 불가피하다. 생태계 파괴에 따른 자연의 대반격이 위협의 부메랑²⁾이 되어 다가오면서 위험사회적 속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낙관론에 의거한 환경문제 해결이 주를 이루지만, 이는 환경윤리의 개량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즉 자연환경을 외적 주변으로 대상화하며 인간 서식처인 생태계 파괴를 방치하기 쉽다. 따라서 자연을 해치면 인간도 해롭다는 인식 하에 인간-자연 간의 상생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생태위기의 치유는 과학이 아닌 윤리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계론과 환원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근대의 과학적 자이는 자연에서 분리된 고립적 자아로서 계량분석과 인간-자연의 이분법적 사고를 옹호하며 자연을 철저히 정복 대상화, 물화했지만, 그 결과는 위협의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다가온다. 따라서 인간중심적 생활방식이 위기원인임을 인정하고, 전체론적 세계관 아래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관계적 자아의 형성이 필요하다(노희정, 2013: 65). 이처럼 인간도 생태계 안의 관계성, 순환성 등 자연의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 자연에 대한 도덕적 배려와 윤리확장, 즉 생태윤리 수용은 긴급해진다.

그러나 인간-자연의 오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관이 지배적 사고가 되어버렸고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일부 생태 신비주의자의 이념적 경도에 따른 환경과시즘 논란 속에서 생태윤리는 쉽게 수용되지 못해왔다. 그러다보니 과학기술 낙관론을 전제한 환경관리주의의 한계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날로 극심해진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자연에의 윤리확장과 생태윤리 수용을 촉진하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세상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전일성과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1) 인간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자연환경을 외적 주변으로 보고 개발 대상화하기 쉬운 환경윤리와 달리, 생태윤리는 세상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전일(全一)성을 전제로 인간 서식처인 생태계 보전을 통해 인간-자연의 공존을 꾀하는 점에서(이도형, 2011),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적 개념이다.

2) 기후변화, 열섬 현상, 슈퍼태풍, 급속한 사막화 및 해양 사막화, 황사 및 미세먼지 농도증가 등 각종 대기오염, 수질, 토양오염, 유전자 변형물질 등이 그것이다.

생태적 배태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이 야기한 생태계 파괴와 생명유린을 제어하기 위한 책임윤리 학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과의 실질적 관계회복도 요구된다.

한국에선 정부주도 아래 자연 생태계가 관리되므로, 생태윤리 수용은 정부부문에서 더 욱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들은 생태계 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의 준거로서 법, 과학지식, 정부간 관계를 주로 활용하는데, 환경보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규해석의 충돌 시 관리상의 문제가 자주 야기되고 책임소재를 놓고 중앙-지방 간에 심한 갈등에 빠진다(이정석, 2012: 5-10). 따라서 개발이익이 난무하기 쉬운 현장에서 과학기술과 법적 준거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생태적 전일성과 생태적 배태성에 대한 자각 아래 생태적 가치실천에 보다 책무감을 갖도록 구체적 행위규범과 세부 행동준칙을 만들어 제시해 주는 실천윤리인 공무원 생태윤리의 수용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 글에선 도구적 자연관 아래 공리주의를 신봉했던 미국의 산림공무원 Aldo Leopold가 오랫동안 자연과 접하고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생태친화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이후 대표적 생태철학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배려대상을 대지에까지 확장하게 된 계기 등 그의 인생역정을 하나의 사례로 다루며, 그가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을 통해 대지윤리(land ethics)라는 생태윤리를 확립해간 과정을 학습하고 공유함으로써,³⁾ 생태윤리의 보편적 수용 필요성을 이해해 본다. 생태주의에선 2개의 자아를 구분하는데, self는 인간의 의식적 신념과 욕구로 구성된 자아이고, Self는 이런 자아의 배후에서 자연과 함께 있는 큰 자아이다. 큰 자아의

3) Leopold는 생태주의의 바이블로 칭송받는 *A Sand County Almanac*에서 자신의 경험과 내적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며 독자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자신도 잘못된 자연관의 희생자임을 고백한 뒤 스스로의 변모과정을 밝혀 독자가 그의 인식변화를 모방할 것을 촉구했다. 책의 서문을 쓴 Callicott에 의하면, 책의 제1편은 1인칭의 기술적 독백으로 전개되다가, 2편에선 1편에서 펼친 자신의 농장체험과 미 대륙 곳곳에서 겪은 경험에서 일반적 교훈과 결론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저자인 나라는 표현도 독자를 염두에 둔 우리라는 표현으로 중심이 동시킨다. 제3편에선 인내심 있게 독자에게 전해온 진화론적, 생태학적 세계관에서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Callicott에 의하면, 독자는 책의 절정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자가 부드럽게 이끌어온 독자 자신만의 자기발전과정을 통해 새 세계관인 생태윤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의 전파가 시급한 점도 알게 된다.

실현은 인간-비인간, 자아-타자 간에 어떤 존재론적 구분도 없다는 점을 체험하는 과정으로서,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더 큰 전체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는 자기반성 과정이다(Desjardins, 1999). 여기서 공리주의 산림공무원 Leopold가 도구적 자연관과 환경개량주의에서 벗어나 원생자연(wilderness) 보전을 주장하기까지의 내면변화, 즉 self에서 Self로 변신한 계기를 분석해 생태윤리 수용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본다. 이를 위해 그가 한때 신봉했던 경제적, 과학기술적 관점의 한계를 성찰하고 자연에까지 윤리확장을 하게 된 이론적, 체험적 근거와 인식 전환과정을 분석한다. 그의 생태학적 인식전환과 대지윤리가 주는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공무원 생태윤리의 수용 및 실천방향도 간략히 모색해 본다.

Ⅱ.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 필요성과 생태윤리 수용에 대한 논의

1. 윤리확장과 생태윤리 논의의 대두

철학적으로 윤리는 사회적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를 구분짓는 것으로서, 사회 내 개인과 집단이 서로의 의존성 때문에 상호간에 협동방식을 발전시키는 성향에서 비롯된다(Leopold, 1949: 238). 다시 말해 윤리는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는 우주에서 자기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의 행복을 억제하며 다른 생명체의 복리를 위해 애쓰는 희생적 마음씨와 행동이다(박이문, 2002). 서구철학의 오랜 전통에서 윤리적 경계는 주로 인간세계에 일치해 왔고, 그 외의 것은 타자로서 어떤 권리나 도덕적 지위도 쉽게 인정받지 못했다. 윤리는 인간중심적, 대칭적이었다. “윤리적 행동이 가능한 자만이 윤리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윤리의 대칭성은 오랫동안 윤리의 황금률이었다. 즉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도덕적 배려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 왔다(Alroe & Kristensen, 2003: 63). 도덕성은 오직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의 일이었다고, 자연은

근대 이전까진 단순한 사물이나 객체로서 인간의 윤리적 관심사 밖에 놓인 부정적 공간이었다(Berthold-Bond, 2000: 8).

그러나 근대 이후의 역사는 종종 도덕적 배려대상의 확대를 보여준다. 특히 휴머니즘 운동이 대칭적 윤리를 넘어 윤리확장을 시도했다. 즉 노예, 여자, 최근엔 미래 후손 및 지각 있는 것까지 도덕적 배려를 확대하거나 도덕적 지위를 부여했다(Alroe & Kristensen, 2003: 64). 어떤 것을 윤리적 논의의 세계에 포함시키면 그 대상은 윤리적 고려대상이 되고 도덕행위자로부터 윤리적 지위를 부여받는다(윤혜진, 2007: 195-198). 여기서 도덕적 혹은 윤리적 지위는 도덕주체가 아니면서도 도덕객체가 되게 하는 그 무엇, 즉 도덕적 자율성은 결여하지만 도덕적으로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김일방, 2003: 66). 예컨대 인간윤리공동체의 윤리적 주체가 아니라 해서 윤리적 배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 정박아, 노인치매환자는 윤리적 주체는 아니지만, 인간윤리공동체 안에선 윤리적 주체가 객체에게 배려할 의무가 있기에 윤리적 배려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런 논리를 확대해 인간이 모든 존재를 자기탐욕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만 보지 않고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윤리확장을 도모한다면, 우리는 자연 내의 생명에게도 얼마든지 도덕적 배려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연에까지 윤리확장을 해야 하는가? 생태계에선 어느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에선 인간도 수많은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인과적 그물망의 연관관계로 맺어진 자연의 한 부분이다(박이문, 2002; 이도형, 2012: 69; 279). 이런 점에서 세상만물은 생태주의 인식의 출발점인 생태적 전일성과 생태적 존재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태윤리 개념이 여기서 대두하는데, 이는 환경윤리의 개량주의적 한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환경은 어원학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자연을 그 주변으로 보는 개념이다. 따라서 환경윤리는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전제로 해 자연을 개발 대상화하기 쉽다. 또 공리주의 경제관에 따라 물질문명의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환경문제의 기술적 해결을 시도하는 실증주의 과학관과 사후관리 해법식 규제정책을 옹호한다. 그러나 극심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 지금은 인간중심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법규준수와 기술낙관론에 의존해 자연자원의 활용에만 만족하는 환경윤리에서 벗어나 인간-자연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윤리확장적 접근이 요구된다.

생태주의가 그 답인데, 이는 자연존재 간의 상호연결에 근거한 전체론적 접근과 유기체적 사유 등 생태학적 세계관을 인간-자연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가치관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윤리적 해석단계이다(한면희, 2007: 18-22). 생태주의는 인간을 생태계의 일원으로 간주해, 인간이 자연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양자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자연을 신중히 이용하되 생태계 파괴를 철저히 제한하는 행동원리로 생태윤리를 강조한다.

대표론자인 Leopold는 인간 아닌 존재도 자신의 본래가치를 위해 도덕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며, 전체로서의 자연은 그 자체의 권리를 가지므로 생명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로운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보며 보전 사상의 주요 원칙을 제공했다.

Leopold 철학의 세계적 대변자인 Callicott(1999)는 개인의 선(good)에 대한 전체 생태계의 선 우위를 인정하는 전체론적 생태철학의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생태공동체 윤리의 개발과 이론적 정당화에 힘썼는데, 그에게 있어 전체론적 윤리는 지구를 향한 의무로서 인간의 일부 희생까지 요구한다. Taylor(1986)는 자연 존중 개념을 창안한 자로서, 자연존중 태도는 모든 개체생명 및 생명공동체가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모든 생물이 자신의 타고난 가치의 주체라 인식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Tyburski, 2008: 101-104).

생태윤리는 이처럼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며 전체론적 시각에서 개개 생명으로부터 지구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의 윤리확장을 도모한다. Callicott(1999: 71-72)에 의하면, 진화론적 윤리확장은 인간공동체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감정적 친밀감을 공유하며 특별관계를 맺는 가축, 재배식물 등의 혼합공동체를 넘어 생명공동체로 나아간다. 그는 첨가(accretion) 개념을 사용해 가족→주민→인간공동체→생명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순으로 도덕적 배려대상을 확장하는 규

범적,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2.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과 생태윤리의 보편적 수용을 저해해온 요인들

최근 생태중심주의자들이 생태계 파괴의 저지를 위해 비인간중심주의적 행동 원칙을 개발, 정당화했지만, 인간-자연관계의 오랜 분리적 인식으로 인해 그간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은 쉽지 않고 생태윤리도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 이론적, 실제적 이유를 살펴보자.

1)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관 아래 성장-개발 논리의 지속적 강세

인간이 만물 중 가장 우월하며, 심지어 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간중심주의관념은 근현대 동안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모든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 이용해도 좋다는 생각을 팽배하게 했다(조경식, 2005). 인간중심주의에 따르면 자연 안의 모든 존재는 인간에게 인식될 때만 존재의미가 있고, 인간이 관심을 보이는 한에서만 존재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자연은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없는 인간목적 달성도구로서 고유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었고(Berthold-Bond, 2000: 9), 결국 인류가 오래 살고 행복해지는 데 유용한 자연만 보호하는 도구적 자연관이 관철됐다.

예컨대 19세기 중엽에서 2차대전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된 사실은 인간은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이란 주변환경을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다는 도구적 사고방식이었다. 또 미국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지는 자연의 힘을 정복, 조절할 수 있는 인간능력을 상징했다. 따라서 사업추구형 보존주의자를 과학적 환경관리자로 칭하며 그들에 의한 인위적 환경파괴를 묵인한 것이 당시의 대중적 환경관이었다(Ekirch, 1944; 박의준, 2008: 177에서 재인용). 그 결과 20세기 초반 미국의 보존주의 운동은 국민의 부와 보건 증진을 위해 자연자원의 과학적 관리와 이용을 중시했다. 1960-70년대의 개혁적 환경주

의도 오염과 자원고갈 등 산업화의 환경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정보에 입각한 환경규제를 추구했는데, 그 궁극적 목표는 산업사회의 유지였다. 20세기 말에도 국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환경 어메니티 추구 등 정부의 자연개입은 정당화되었다(Cawley, 2001: 84-92). 이처럼 산업화 시대에선 자원을 능률적으로 동원, 관리하는 경제기술이 중시되고, 특히 도구적 합리성에 의거해 사회문제가 계산논리로 규정되면서 자연도 개발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Parkin, 1994: 22; 이도형, 2011: 81-89).

2) 자연의 야만성 및 역기능에 대한 공포와 생태 디자인의 미학적 요소 결여

인간-자연의 분리적 인식 하에선 자연을 적대적으로 보기 쉽다. 즉 인간과 분리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 자연을 이질적인 것으로 타자화하고 그것에 더 공포감을 느낀다. 그 결과 자연을 통제, 지배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하게 발생했다(Barry, 1999). 자연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케인, 토네이도, 화산폭발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자연세계에선 지배자-희생양 관계처럼 경쟁, 배제, 약탈은 물론 생존을 위한 동물의 싸움도 자주 목도된다.

그렇기에 자연과의 관계맺기에서 미학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자연 보호 혹은 생태계 보전행위는 대상의 미학적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 미학적 호소가 덜할 때 습지, 늪, 사막, 소택지 등 덜 아름다운 경관은 인간의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 반면 매력적인 것으로 발견될 때 인간의 지지를 더 받고 자연보전에의 동기부여도 커진다. 그런데도 최근의 생태 디자인에선 생태미학이 덜 중시된 채, 자연이 최상의 디자이너란 의식 하에 인간이 자연의 지혜와 작동을 무조건 모방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Nassuer (1997)는 생태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이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돌보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도 생태 미학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aito, 2002: 245-258).

3)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우려와 환경파시즘의 경계

생태계 파괴흔적이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최근 자연의 공익가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자연계의 연구방법으로서 자연독법이 주목받는다. 자연독법은 자연세계를 연구해 얻은 지식을 인간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사회에 대한 설명력과 더불어 인간세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규범적 처방력을 제고하지는 주장이다(Barry, 1999). 그러나 자연독법의 실례인 사회생물학은 동물과 인간 행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 종종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다. 비판론자들은 인간의 도덕행동은 문화와 이성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유전자로의 환원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동물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므로 그것이 인간에게도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비판한다(Wuketits, 1999: 150-152).

생태신비주의에 따른 환경파시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부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자연의 모든 구성요소가 긴밀히 상호작용해 초유기체적 실체가 나타난다는 전체론적 사고 아래, 그 일개요소에 불과한 인간에 의해 자행된 생태계 파괴를 비판하며 반 생태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멸종위기종 등 자연보호에의 집착에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개발 자체를 거부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대안을 소홀히 취급하기도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기농, 단순한 삶으로의 회귀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김용환, 2012: 354-357). Freemuth(2001: 64)은 이런 점에서 생명 중심적(biocentric) 행정이 자신이 봉사해야 할 대중에게 어떻게 이로운지가 불분명하며, 정책은 경직된 이념보다는 사려깊고 책임감 있는 현실적 판단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과학기술적 진보에 의거한 인간의 환경문제 해결력 신봉

환경관리론자들은 인간의 위상에 대한 생태중심주의자들의 과소평가도 경계한다. 인간은 생태계 파괴의 장본인이지만 그것을 복원시키려 노력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대를 가로지르며 축적된 문화적 적응력을 통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인 과학기술은 타 생물종에 비해 인간의 환경 적응력을 크게 제고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환경 수용력은 기술 의존적 변수의 문제이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환경관리론자들은 결국 현실적 철학이 필요하며 문화적 적응능력을 지닌 인간의 위상을 재정립하면, 과학기술을 개혁하고 기존 경제체제의 전반적 변화를 유도해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은 특히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환경을 자원으로 인식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환경자원을 관리(절약, 재생, 재활용)할 것을 강조한다(김용환, 2012: 358-362).

3. 과학기술 낙관론에 의거한 환경윤리의 한계와 생태위기의 현주소

그러나 문명발전을 이루어온 인류의 근현대사는 인간이 도구적 자연관과 과학기술 낙관론에 의거해 지구에 큰 흠집을 낸 생태계 파괴역사이기도 하다. Dunlap(1994)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생활공간, 자원공급창고, 폐기물저장소로서의 3기능을 수행하는데, 생태문제는 이들 3기능이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지구가 그것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물론 현대 환경관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에 들어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원의 현명한 사용에 기반한 지속적 성장이 핵심이기에 궁극적으로 자연보호가 아닌 개발 보호를 의미한다(볼프강 작스, 2001).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경제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GNP 등 경제기준은 핵심요소로 취급한 데 비해, 생태계지속 측정변수 등 생태적 건전성 논의엔 소홀한 채 기술, 경제중심 논의에 경도된다(정규호, 2005: 19). 녹색론자들(문순홍, 2006: 308)은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 개발론자들이 환경공학에 의지해 생태문제를 국지화, 미시화한 뒤 인간중심주의, 과학기술 낙관론 등 지배적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해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환경윤리의 정당화 논거인 과학기술 낙관론은 그 근본적 한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식량문제의 경우 녹색혁명은 생산성 높은 품종개량을 통해 기아문제를 해결할진 모르지만, 농약, 화학비료 등 생태비용을 초래하고 유전자 조작은 먹을거리 안전문제를 노정한다. 오염문제의 경우 생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두지만 단기적 경제 합리성에 종속되어 산업생산방식에 근본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인구문제의 경우도 환경수용력이 기술의존

변수이긴 하나 인구수용능력의 무한증대는 곤란하다(김용환, 2012: 369). 그런 점에서 환경윤리는 인간행동의 긍정적 결과가 부정적 결과보다 크면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간중심적 결과주의이며, 이런 입장은 실제로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원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Swart, Windt & Keulartz, 2001: 232). 기술낙관론에 빠지면 특정 환경사안에 대한 인간의 대비책을 완전한 것으로 과신한 나머지, 오히려 대책 설정 이전보다도 더 큰 규모의 생태문제를 경험하는 위험성 전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박의준, 2008: 181). 예컨대 주기적 범람피해를 줄이려는 제방구조물 건설이 주민들로 하여금 범람 자체에 대한 인식을 아예 잊게 해 범람 예방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더 큰 재해를 당하게 한다.

4.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 및 생태윤리 수용의 책임윤리적 불가피성

UN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보고서(2005)에 의하면, 지난 50년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물, 목재 등 기본 생태자원의 60%가 고갈, 악화되었는데, 범지구 차원의 비상대책이 없는 한 30년 내에 지구 황폐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인간중심주의이고 생태주의는 소수의 가치관에 불과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생태위기 대신 환경문제라는 소극적 용어를 줄곧 사용해 왔고, 과학 기술 낙관론과 인간-자연의 이분법적 사고 아래, 자연을 인간의 이용, 개발 관리 대상, 즉 자원으로 주로 인식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인간-자연 관계를 재정립하는 인식론, 존재론적 대변혁이 필요하다(송명규, 2004: 22-26). 서구철학자 Pascal에 의하면, 인식론적 차원에선 인간이 자연 자체를 대상화하고 그것을 관념화할 수 있어, 인간을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유기체의 일부인 한,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없인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생태계로서의 자연은 존재론적으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물학적 존속을 위해 절대 필요한 근본 조건이 된다(박이문, 2002). 도교철학을 비롯한 동양사상에서도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원리에 일치하려는 인간의 삶을 전체(dao)와 부분(dc)의 조화 관점에서 강조해 왔다. 전체인 dao는 만물이 존재하는 공유된 맥락이다. 따라서 자연 내의 모든

생물종과 사물은 존재론적으로 연계되고 같은 생명공간을 공유한다. 부분인 de는 dao라는 전체맥락 속에서만 구현되는 개별존재이다(Lai, 2003: 255). 세상만물은 dao라는 생태적 전일성 속에서 de로서의 생태적 존재성을 갖는 것이다.

상기한 생태적 자각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상호연계적 존재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지역 생명공동체와 전체 생태계를 ‘확대된 나’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의거해 자연에까지 도덕적 배려를 확대하는 윤리적 진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생태윤리이다(Alroe & Kristensen, 2003: 66-68). 생태윤리는 인간이 자연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공동체적 행위규범을 찾고 그것을 실천한다. 이는 타인 혹은 동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인간중심적 사고를 넘어, 자연이 도덕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한 인류를 포함한 생명공동체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자연세계를 적극 포용해야 할 윤리확장의 긴박성을 뜻한다(Curry, 2006: 1-3).

생태윤리는 그런 점에서 현대윤리의 핵심인 책임윤리와 연결된다. 현대윤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확장된 인간의 힘에 비례해 커진 윤리적 공백에 답해야 하는 시대상황에 직면해 있다. Jonas(1984)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이 야기한 생태계 파괴와 생명유린을 강제로 제한하기 위한 인간 가능성을 책임 개념과 연결시킨다. 여기서 어떤 규범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개개인을 강제하는 책임은 윤리와 만난다. 윤리는 제 생명에 대한 도덕적 고려이자 확장된 책임이기에(변순용, 2007), 책임윤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존재론적 책임확대를 강조한다.

인간-자연 뿐 아니라 미래 후손세대를 위해서도,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책임윤리는 필요하다(Alroe & Kristensen, 2003: 75-78). 시간들의 확장을 통한 장기적 정책안목이 요구되기 때문인데, 국민 삶의 질을 제도로서 제고시켜야 할 공무원들은 장기적 시간들을 자신의 역할관에 반드시 통합시켜야 한다(Luton, 2001: 77). 이런 점에서 단기적 처방 위주의 환경윤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치유를 도모하는 생태윤리가 책임윤리 차원에서도 더 적실성을 갖는 상위 개념이자 윤리확장적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생태윤리 수용은 매우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이나 파괴행위의 귀착점은 그들의 세부적 정책결정과 구체적 집행에 의해 좌우되

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자신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적 존재성에 대한 자각 아래, 자신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반 생태적 정책집행이 위험의 부메랑이 되어 다가옴을 깨닫고 늘 자기행동을 경계할 때 인간-자연 간 상생적 균형구도가 확립된다(이도형, 2012). 따라서 그들이 국토개발과 지역생태계 관리에서 최소한 무엇을 해선 안 되고 무엇을 필히 도모해야 하는지 등 생태문제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접근, 즉 자연에 대한 공무원의 윤리확장 의식이 보다 요구된다.

Ⅲ. Leopold의 생애와 대지윤리

Leopold의 *A Sand County Almanac*은 인간의 도덕적 배려를 자연에까지 확장시킨 대표 저작물이다. 그는 원래 도구적 자연관과 공리주의를 신봉하던 미국의 산림공무원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연과 접하고 생태학을 공부하며 생태철학자로 변신했다. 그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던 종래의 분리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체계적 입장을 취하며, 윤리를 생명공동체 내 상호의존성 지속을 위한 자율적 속박장치로 보고, 인간의 윤리가 생명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공무원 입직 후 오랜 자연체험과 생태학 공부 결과, 그가 잘못된 자연관을 성찰하며 생태학적 인식전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을 하게 된 계기와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대지윤리의 함의를 학습, 공유해 봄으로써 생태윤리 수용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본다.

1. 생애적 전환⁴⁾

Leopold는 1887년 미국 아이오와 주 벌링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자연보전이 사회운동으로 발흥하기 전부터 동물 포획량 제한 등 자연에 대한 자발

4) 그의 생애적 전환에 대해선 별도 인용표기가 없는 한 대표적 전기인 Lorbiecki(2004),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레오폴드 재단 홈페이지(<http://www.aldoleopold.org>, AldoLeopold/leopold-bio.shtml)를 참조했음.

적 절제를 실천했고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숲속 생물을 관찰하는 등 자식들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심어줬다. 그는 외할아버지의 가르침 덕에 어려서부터 정원을 가꾸고 파종, 전정 등 식물 보살피는 법을 배우며 자연공부에 심취했다.

Leopold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대 산림청장인 Pinchot의 가족이 기부한 기금으로 설립된 예일대 산림학부에 1906년에 입학했는데, 그는 대학시절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Pinchot의 주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전하자는 Muir의 주장 사이에서 혼돈을 빚었지만, 초기엔 Pinchot의 주장에 동조했다.⁵⁾ 즉 학교 설립자의 공리주의 철학을 받아들여 장기적 안목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송명규, 2004: 61). 그는 Pinchot의 정예사단이 되기 위해 산림법, 산림구획, 목재 관리, 운송을 공부했으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숫자, 목재, 돈의 관점에서 산림을 보았다. 이후 산림공무원 임용시험에 통과해 22살에 공무를 시작했는데, 초기 임무는 목재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산림과피를 막아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기후 악조건 하에서의 공무로 얻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산림 보호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아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유림내 동물보호계획을 구체화했고, 남서부 산림 내 사냥동물 원상복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사냥동물도 나무처럼 숲의 산출물로 보고, 야생종을 개체수와 특성에 따라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 보호구역을 정해 유료로 사냥허가를 내고 이익금으로 경비대원을 고용해 포식자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총수입에만 관심을 두고 산림내 방목허가를 더 많이 내주는 상사의 지침 등 산림청의 근시안적 정책에 자주 부딪히며, 조금씩 공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원생자연 보전 쪽으로 생각의 변화를 갖기 시작한다. 그는 지역 내 동식물 중

5) 1900년대 초기는 미국의 진보시대이자 보존주의 운동의 성장기였다. 보존주의는 능률성에 초점을 둔 자원의 합리적 사용, 미래 사용을 위한 기획, 국가문제에의 전문지식 적용을 위해 주도되었는데, 산림청장 Pinchot는 보존주의에 의거해 숲을 연속화해야 할 작물로 보았다. 이는 자연을 사회지탱을 위해 요구되는 저장고로 본 견해로서, 능률적이고 공평한 자원활용을 사회의 복지와 그 속에 서식하는 사람들의 유지를 위해 중시하는 인류중심주의적 접근이었다(Freemuth, 2001: 58-60). 그의 보존주의 운동은 과학적 관리원칙 하에 삼림이용 결정권을 개별 삼림관리자에게 위임하는 실용적 산림정책으로 발전했다(Desjardins, 1999).

류 및 개체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포식자를 제외한 모든 생물종이 경제적, 생태적으로 똑같이 중요하다고 상사들을 설득했다. 그의 종 다양성 보전 청원은 미국 산림청 최초의 것이었다.

이후엔 경관과 미학의 관점에서도 숲의 보전을 주장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아서 카하트와 의기투합해 Pinchot의 현명한 이용정책에 사로잡힌 산림청의 시각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산림경비대원에게 숲의 총체적 건강에 대한 주체적 생각을 가질 것과, 산림청정책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을 갖고 항상 숲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며 일에 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산림청 내에서 원생자연보전분야의 리더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1921년의 《삼림학 저널》에선 삼림청이 목재생산, 사냥감 보호차원을 넘어 원생자연을 휴양자원으로 미리 보전하는 데까지 책임영역을 넓힐 것을 주장했다. 종전 후 시민들이 휴가여행을 즐기자 도로개선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에 “휴양지 개발은 아름다운 곳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감수성을 심어주는 것”이라 지적해, 도로 반대자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1923년엔 국유림에 자연보전지역 지정을 제안해 부결되긴 했지만, 원생자연의 보전 필요성을 역설한 그의 글은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1924년엔 힐라 국유림에 최초로 원생자연보전지역이 지정되었다.

대공황기 동안 정부의 환경정책과 산림업무가 지리멸렬해지자 1928-29년 스포츠 총포 및 탄약제조업 협회에 잠시 근무했는데, 그는 지질 및 사냥행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9개 주를 여행하면서, 토양침식에 따른 서식지 파괴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의 보전역할엔 한계가 있어 땅 소유자인 농부들의 윤리와 도덕심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개체수 통제 등 포식자의 생태적 가치도 인식했다(송명규, 2004). 산림청장이 그의 재능을 Maddison 임산품 연구소에서 쓰라고 요청하며 부소장 직을 제의했지만, 상업적 성격의 그곳 작업에 당혹해 하며 자연친화적 글을 계속 발표했다.

이후 Wisconsin 주 농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주의 환경보존 연구에 대한 실천적 인식이 강해, 강의와 더불어 라디오 연설, 강연을 통해 토양침식 문제를 제기하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작물연구는 물론 대학 내 수목원과 야생동물보호

구역 수립에도 참여했다. 고교생 환경보호단체 모집에 관여하고 야생생물협회도 조직했는데, 그 목적은 생물학 연구와 지식에 대한 보호법안을 통과시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1935년엔 Wisconsin 주 강변의 모래땅에 있던 낡은 오두막을 재건해 가족 모두 참여하는 텃밭을 만들고 주변 동식물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자신만의 생태 복원 실험을 하면서 인간-대지의 바람직한 관계 및 생태미학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인간-자연 간 새로운 관계맺기, 관계회복의 실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지공동체에 대해 알수록 인간이 대지에 미치는 악영향은 줄어든다는 그의 소신에서였다.

2차대전 중엔 자연에 대한 폭력에 맞서며, 자연보전을 넘어 인간-자연의 융화를 위해 미국인의 관념을 변화시키려는 생태교육을 주창했다. 자연보전은 정부의 물리적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대지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볼 때 비로소 사랑을 갖고 겸손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삼림연합의 명예 부회장, 미국 생태학협회 회장에 선출되었지만, 말년엔 왼쪽얼굴에 신경줄기가 부풀어 오르는 주기적 고통으로 고생하다가, 1948년 이웃농장의 화재진압 시 심장마비로 죽었다.

2. 인식의 전환

1) 오랜 자연체험을 통한 잘못된 인식의 성찰

그는 공무원 시절의 장기저 삼림조사 등 오랜 자연체험과 생태학을 접하면서, 자연을 인간의 목적대로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환경보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생태학의 도움에 따라 한줌 흙에도 엄청난 유기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며, 공리주의적-경제적 계산을 초월하는 도덕적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Desjardins, 1999: 290).

그의 인식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사건도 있었다. 그는 Blue 강 상류 협곡지대의 산림조사를 하다가 늑대무리를 만나 사격을 가했는데, 그때 총을 맞은 어미늑대

의 두 눈에서 꺼져가는 맹렬한 푸른 불꽃⁶⁾을 보며,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늑대와 산 들만이 공유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된다. 자연인 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인간만 모르는 늑대의 울부짖음에 숨은 뜻이 건강한 야생의 상징임을, 또 포식자수 제한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지극히 인간중심적 견해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즉 사슴의 과도한 증식은 사슴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쓰라린 체험을 한다(Leopold, 1949<이하에선 책제목의 이니셜을 따 SAC로 표기>: 129-137).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자신이 실용적 관점에서만 숲을 보고 야생생물을 관리했음을 성찰한다. 즉 신참공무원 시절 공리주의 사고에 따라 사냥꾼이 사슴 때에 접근 가능하도록 원생자연지대를 들로 쪼개는 신작로 개설을 허용하는 등 사슴자박에 빠졌던 과거를 후회했다. 또 남서부 지역의 회색곰 박멸에 일조하는 등 생태학적 살인에 중범 역할을 한 과오도 반성했다. 결국 그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환희와 그것의 점진적 상실에 따른 슬픔, 또 자신을 포함한 산림공무원이 그 상실에 일조했다는 자책감과 더불어, 포식자, 사냥감, 화재, 숲 모두가 생태계 내에서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갖고 고유의 역할을 하므로 모두 없어선 안될 존재임을 인식했다(Lorbiecki, 2004: 167; SAC, 138-141). 그는 오랜 자연체험과 내적 성찰을 통해 인간-비인간 간에 어떤 존재론적 구분도 없다는 점을 체득하고, 결국은 자기를 더 큰 전체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는 자기반성 과정을 거쳐 self에서 Self로 변신해 갔다.

2) 생태학과와 만남 및 농장에서의 생태복원실험을 통한 자연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

일생에 걸친 그의 작업은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이었다. 그는 생태윤리 최초의 체계적 저작을 시도했는데(Desjardins, 1999: 288), 이는 당시의 사회기류에 떠돌던 사상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야생이 세계의 구원”이라 말한 Thoreau가 그의 사상발전에 초기 영향을 주었고, Darwin도 2천년간 지속된 인간-자연의 이분

6) 대표적 전기인 Lorbiecki(2004)의 《야생의 푸른 불꽃》이란 책 제목은 여기서 따온 것이다.

법 극복 속에서 인간을 하나의 종적 지위로 끌어내리고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혈족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영국 생태학자 Ealton⁷⁾과 교류하며 먹이사슬, 에너지 순환, 생태적 지위 피라미드 등 생태학 개념을 알게 되었다. 또 “대지는 유기체의 시공간에 있어 인간보다 활동범위가 넓다”는 Ouspensky의 자연유기체 논지도 받아들였다. 그는 생태학과 유기체 연구를 통해 전체론적 지향 속에서 유기체들이 상호간 그리고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탐구했으며(송명규, 1998: 43-45), 그 결과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 필요성을 조금씩 체득해갔다.

그의 농장생활 및 생태복원실험은 대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는 매일 새벽에 야생관찰 일기를 쓰며, 태양에 반응하는 생명들의 흐름을 좇는 생물계절학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한갓 개인에 불과한 자신을 성공적인 자연 관찰자이자 계절의 전령으로 만들어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SAC, 76).

“농장은 생태학 교과서이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교과서 번역역할을 맡은 자이다.” “한 그루의 늙은 굴참나무를 가진 자는 역사 도서관을, 그리고 진화라는 초대형 공연의 예약석을 가진 것이다.” “오래된 나무토막의 자서전은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문학이다”라는 SAC의 많은 문구들은, 그의 치열한 자연관찰과 자연과의 오랜 관계맺기의 결과물이다.

그는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려면 자연과정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연과정은 대지와 그속 생명체가 특징적 형태를 갖게 되는 진화과정과 자기존재를 유지해가는 생태과정이다. 대중은 자연학습에서 출발해 이런 인식단계에 도달하는데, 자연과정 인식은 더 이상의 자연고갈과 악화를 막아준다. 그는 자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연과정 인식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관리기술을 자연에 적용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Lorbiecki, 2004: 207-209).

7) 그에 따르면 자연세계는 생물들이 각자의 생태적 지위와 역할, 직분을 담당하는 복잡한 협동사회이다.

3. 대지윤리

대지윤리는 SAC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논지를 통해 자연에의 윤리확장과 생태윤리 수용의 보편적 필요성을 밝혀보는 차원에서 3단계(새로운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윤리내용, 윤리실천전략)로 재구성해 논의한다.

1) 생명 피라미드 등 대지공동체 인식과 새로운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Leopold는 생태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지가 단순한 흙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단순한 자산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토양, 동식물의 회로를 거쳐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임을 알게 된다(SAC, 253-254). 그는 이런 유기체 내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생명 피라미드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그 안에서 생물적 요소들은 서로의 먹이가 되는 물질적 순환관계를 이루고, 이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생물-무생물 요소 사이를 순환한다. 그리고 생물-무생물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단위가 생태계이다(Odum, 2001: 45).

따라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유기체가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서식지와와의 관계, 즉 생태계 내 먹이사슬과 에너지 순환이다(SAC, 254-256). 여기서 그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개별인자와 무리의 군집으로 대지를 보며 대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했다. 그래서 모든 생물과 서식지의 관계라는 넓은 의미로 생태학을 사용하며 동식물과 토양의 생태를 함께 연구했다. 특히 태양에 반응하는 생물의 흐름을 쫓는 생물계절학을 통해 대지공동체 내의 복잡한 상생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생태학이 공동체의 과학임을 인식했다.

인간을 위해 땅이 존재한다는 대지에 대한 아브라함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인간의 생산활동을 위한 경제적 자산이고, 인간은 이를 이용할 특권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상기한 것처럼 생태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인간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자신의 고유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독자적 생명 피라미드이다(SAC, 239-242). 따라서 그는 대지를 재산으로 보는

Locke의 관점을 거부하고 도덕적 배려대상을 동식물, 토양, 물에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orbiecki, 2004: 292). 인류문명은 대지공동체 위에 세워진 것인데, 대지공동체에선 우리가 경제공동체에 속한 누군가에게 의존하듯이 생명공동체의 뉘가에 필히 의존한다. 따라서 인류문명의 지속을 원한다면 대지와 같은 생명공동체나 생태계에까지 도덕적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송명규, 1998: 41).

2)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대지윤리의 정립

역사와 생태학의 증거를 조합해 보면, 인간에 의한 변화가 덜 격렬할수록 생명 피라미드의 재구성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인구밀도를 높임으로써 얻는 이익은 수확체감 법칙에 종속된다(SAC, 257-258). 즉 기술-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지이용은 자연파괴를 초래한다.

그러나 기계화된 인간들은 좋은 삶든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할 대지를 갈아엎개는 데서 진보를 뿜낸다. 과학은 자연파괴에 기여한 것을 진보로 보며, 능력적 객관성을 명분삼아 도덕적 책임회피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SAC, 162-168). 실제로 그는 당시의 환경주의를 두 진영으로 나눈 뒤 진영 간의 의견차이에 주목했다. 먼저 A진영은 대지의 기능을 재화생산으로 본 데 비해, B진영은 대지를 생물 유기체 구조로 본다. 따라서 전자는 산림의 가치를 목재, 종이 등 경제적 재화로 본 반면, 후자는 산림을 인공이 아닌 그대로의 생물상으로 보았다. 결국 전자는 수렵, 고기를 중시해 자연히 마릿수를 관리적으로도 삼고 만족하는 데 비해, 후자는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SAC, 258-259).

그는 A 진영의 인간중심주의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해 왔음을 반성하고, 과학적 방법과 기술진보를 통한 자연보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민간자원보존단의 기술의존적 침식방지 행위가 오히려 자기파괴적임을 목격하고, 전문 임학자, 침식 전문가보다는 보통사람들의 동정심과 깊은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원생지대 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Lorbiecki, 2004: 184-185). 특히 1936년 멕시코 치와와 주 시에라마드레 산맥의 협곡을 여행하던 중 건강한

야생 생물상과 조우하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문명이 파괴한 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과학을 위해서도 원생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등 보전 문제가 과학기술이 아닌 윤리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인간이 토양, 물, 생물과 함께 생태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고 공동체의 시민역할을 기꺼이 담당할 때 인간과 대지의 조화상태인 보전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았다(SAC, 240-243). 그러면서 기계적 지구관 대 생태학적, 유기체적 지구관, 노예 및 하인으로서의 대지 대 집합적 유기체로서의 대지, 정복자 인간 대 생태적 시민인 인간을 대비시켰다.

Leopold에 따르면, 대지가 대중에 의해서도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받아들여지면 그에 조응하는 대지윤리가 인간사회의 집합적 양식 속에 배태될 수 있다. 즉 대지를 공동체로 인정하면 상호의존적인 구성원 간의 공생을 위한 협력체제가 필요해지는데, 이를 규정하는 것이 윤리이다. 대지윤리는 토양, 물, 생물 혹은 이를 포괄한 대지가 배려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동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윤리는 개인간, 개인-사회간 관계로 발전했는데, 대지윤리는 인간-대지, 그 대지 위에서 사는 생물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세번째 윤리영역이다.

그는 대지윤리의 진화론적 가능성과 생태학적 필연성을 강조했는데, 전자는 진화적으로 가능한 일은 누군가에 의해 언젠가 주장되며 그런 점에서 대지윤리의 보편적 수용시기가 곧 다가옴을, 또 후자는 현 생태위기가 인간의 생태적 무지에서 기인함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윤리확장은 종래엔 철학자들의 탐구대상이었지만 실재론 생태학적 진화의 한 과정이다. 윤리는 생태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일종의 공동체적 지도양식이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공동체의 본능이다(SAC, 237-240). 그래서 그는 야생 공동체와 인간공동체를 별개로 보는 그릇된 생각을 처음부터 배제했다(Lorbiecki, 2004: 266).

물론 그는 인간이 공동체 내 타 구성원을 삶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인정은 하되 흙의 황폐화, 물의 고갈, 동식물 멸종으로 이어질 정도의 과도한 이용, 즉 생태계 손상이나 대지공동체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과도한 이용은 불허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좀더 중시했다(김일방, 2003: 52). 특히

어떤 것이 생명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경향에 있으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고 보며, 개별구성원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에 이를 종속시켰는데(SAC, 261-264), 여기서 대지윤리라는 그의 전체론적 생태윤리는 개체론적 환경윤리와 명백히 구분된다.

3) 대지윤리의 실천을 위해 생태적 양심을 키우는 생태교육 도입

인간이 생명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음은 역사를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면 알 수 있기에, 그는 대지윤리가 성립하려면 생태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된 많은 역사적 사건은 실제론 땅과 사람간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고, 역사는 정복자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자멸함을 보여준다.

Leopold는 그런데도 현 자연보전 성과가 미약한 이유를 대지를 경제가치로만 여겨온 오랜 관행에서 찾았다. 그는 경제이익에만 바탕을 둔 보전체계는 상업가치는 없지만 대지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긴요한 요소를 무시하고 멸절시키므로(SAC, 251),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경제학이 모든 토지이용을 결정한다는 그릇된 믿음이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악화는 대지활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 때문이며, 결국 윤리확장은 지식증가 없인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대지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많은 행위와 태도는 땅 이용자의 주머니 사정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그들의 성향과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땅 소유자에게의 자발적인 윤리적 의무부과만이 상황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SAC, 263).

“땅 주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땅 이용방법도 바뀌고 보전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생태적 양심의 교육을 통해 우리가 대지의 일원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대지를 사랑하고 진기하게 여기는 농부의 마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농부는 농지가 건강할 땐 자부심을 느끼지만, 땅이 오용의 흔적을 드러낼 때 부끄럽다. 대지윤리는 땅에 정서적으로 연관된 이런 농부의 마음에서 발견된다. 농장의 경관은 농장주 자신의 초상화이다. 그렇기에 토양오염은 개인적 당황과 공적 수치를 불러오고, 이는 자기속박의 자율적 내면화인 대지윤리를 촉진시킨다. 바로 이 점

에서 생태적 양심은 공동체의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한다. 대지윤리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이를 위해 존중, 예의, 책임감의 범위가 자연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AC, 240-246).

3. Leopold의 대지윤리에 대한 비판과 재음미

대지를 도덕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한 그의 책은 발간 당시엔 인정받지 못하다가 20세기 후반부터 보전론의 성서로 재평가됐다. 3가지 각도에서 이를 음미해보자.

첫째, 그의 대지윤리가 현대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낮은 점, 특히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태의 완전한 재구성을 요구한 급진성 때문에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이 산업화의 각종 해악에서 살아남으려면 생태윤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자연관리 방식에 종식을 고하는 그의 혁명적 제안은 1960년대 말부터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예컨대 Rogers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운행법칙에 대한 무지가 환경파괴를 가속화했다고 보며, 인간 중심주의의 악랄한 장악력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생태적 사고가 체득된다고 역설했다(김원중, 2010: 22).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을 받는 오늘날엔 그의 대지윤리가 더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아사히글라스재단(2013)이 발표한 세계 환경위기시계⁸⁾는 9시 19분으로 여전히 위험수준이며, 우리나라는 9시 31분으로 더욱 위험한 수준이어서, 자연에의 윤리확장을 논한 그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혀 낮설거나 급진적이지 않고, 난개발 방지와 사회의 생태적 전환과정에서 매우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그가 발견한 생태학적 사실 자체가 생태계의 온전성, 안정성이 윤리적 가치임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김일방, 2003: 57-60). 그런 점에서 가치판단과 과학을 혼동하며 정책목표로 특정가치를 선호한다는 문제점도

8) 전세계 환경파괴에 따른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으로, 0-3시는 양호, 3-6시는 불안, 6-9시는 심각, 9-12시는 위험 국면이다.

제기된다(Freemuth, 2001:63). 그러나 Desjardins(1999: 306)에 의하면, Leopold가 발견한 자연적 사실이 직접 윤리적 결론을 이끈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성향과 태도변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윤리적 가치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경제-도구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어떤 것은 온정성, 안정성, 미를 보존하는 만큼 옳다고 생각하도록 노력하라는 그의 권고는, 우리의 궁극적 도덕자세로서 자연에 대한 존중 태도를 함양시켜 자연보전을 도모케 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대지공동체 전체의 온정성, 안정성, 아름다움에 개별인간의 자연이용을 종속시킨 점에서, 그의 대지윤리가 환경파시즘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생물학자 Davis(1991)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생태학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 있어 모두가 평등한 도덕적 권리의 보유자이며, 물, 땅 같은 무생물도 인간과 동등한 진 않아도 생명유지 시스템의 주요 부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전체론적 사고를 강조한다. Leopold도 자연질서를 꺾만큼 과도한 개발을 경계한 것이지 자연이용 자체를 터부시한 것은 아니다. 또 개개생명의 안위에만 매달리면 대규모의 환경현안은 심화된다. 결국 공동체 전체의 건강이 중요하며(송명규, 1998: 60), 이는 대지를 생태계로서 보는 대지윤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윤혜진(2007: 216)은 이런 점에서 대지윤리의 최대장점을 환경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준 데서 찾는다. 즉 토양, 물, 생물 모두를 포함한 대지윤리 담론을 통해, 우리는 토양,수질오염, 자원고갈, 기후변화, 생물 멸종 등 대규모 생태문제를 윤리적 논의의 대상화할 수 있다. 따라서 Callicott(1999)은 모든 환경논의가 대지윤리 패러다임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를 모범 유형으로 활용할 때 생태윤리의 기초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생태윤리의 보편적 수용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다.

IV. Leopold의 생애와 대지윤리가 주는 행정학적 함의

Leopold는 공리주의 산림공무원으로서 한때 실용적 관점에서만 생태계를 잘못 관리해온 점을 성찰하고 생명 피라미드로서의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

대지에까지 윤리확장을 하며, 대지공동체와 조화롭게 사는 것이 보전윤리임을 역설했다(Desjardins, 1999; 송명규, 2004). 그의 생태학적 인식전환과 대지윤리가 주는 행정학적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성을 행정과 생태계 관리의 기본가정으로 삼는 등 공무원 생태윤리 수용의 명확한 논거를 제공해 준다. 생물과 서식처의 유기체적 관계에 주목한 Leopold의 대지공동체 인식은 생태계에서 모든 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일부를 파괴하는 결정이 궁극적으로 전체파괴를 유도하고 미래세대도 위협함을 잘 보여준다. 공리주의 신봉자였던 그가 이런 전체론적, 관계론적 관점을 갖게 된 점은 현대행정의 과제인 사회문제가 생태계처럼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명확한 경계가 없어 쉽게 정의되지 않는 점에서 필히 중시되어야 한다. 서로 연계된 문제를 무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에, 행정은 관계성에 대한 기본가정에 좀더 입각해야 하고, 그 점에서 향후 공공정책은 인간-자연의 상생적 관계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장만이 아니라 서식처인 생태계의 질적 증진에도 정책초점이 모아져야 한다(Timney, 2001: 30-35). 따라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선 인간중심주의에 따른 정부의 생태계 파괴가 극심하다. 환경정책은 종래의 무분별한 개발방식을 기술적으로 개량해 국토를 고도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경제가치를 극대화하는 신개발주의로서, 개발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조명래, 2003). 국립공원 관통도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진이 개발수요를 증폭시켰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뉴타운도 신개발주의 성격을 드러낸다. 환경정책도 생태계를 경제의 일부로만 이해하는 등 후진적이다.⁹⁾ 그런 점에서 개발이익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생태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정책결정에 직면할 공무원들이 인간 서식처인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내

9) 한국과 UNDP가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생태계 보전사업]이란 협약 문서의 머리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삶의 질을 경제, 정치구조 속에서 해석해 환경배려 수준이 과학기술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UNDP는 이런 갭에 주목하며, 환경배려의 진정한 의미 및 위기 생물종 생존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인식이 미시경제적 측면에 머문 채 대중의 인식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한다(박의준, 2008: 191).

는 데 유용한 구체적 행위규범과 행동준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생태윤리를 조속히 수용해, 전체론, 관계론적 시각에서 지역 생태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둘째, 과학기술 낙관론에서 벗어나 적극적 생태윤리인 보전,복원 규범 강화와 탈발전 이론의 모색을 가능케 한다. Leopold는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류문명이 파괴한 자연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식하며, 보전이 기술이 아닌 윤리 문제임을 상기시켰는데, 보전은 개발환상에 젖어 파괴하기 쉬운 자연을 원상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위협의 부메랑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는 의미가 강하고, 복원(restoration)은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치유해 자연의 원상태로 되돌려 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파괴 요인을 사후에 법규제와 과학기술로 제어하려는 종래의 소극적 환경윤리를 넘어, 생태계 파괴 소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적극 치유해, 인간-자연의 상생관계를 항상적으로 유지하려는 보전,복원 규범은 매우 시의적절한 적극적 생태윤리 규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생태계 관리에 대한 장기적 시간틀 확립과 관계 공무원의 책임윤리 실천을 도모할 수 있다.

보전, 복원은 생태발전 등 탈발전이론의 모색에도 유용하다. 성장론자들은 빈곤과 대도시 생활문제 해결책으로 성장과 개발을 권유하지만, 과잉설계된 개발은 자연환경을 더 파괴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장의 한계를 넘어 발전의 역이 필요하다. 실제로 선진국에선 1990년대의 과(過)발전이 문제가 되며 이미 개발된 것을 어떤 조건에서 해체, 제거하며 녹색사회로 진입할지가 탈발전의 현안으로 등장했는데(강문규, 1997), 심층생태학자들은 문명발전의 테크노크라트 모델, 공격적 시장경제, 과도한 소비생활에 비판을 가하며, 새로운 생태적 사고에 의거한 그린정치, 그린경제의 제안 등 사회의식의 근본변화를 주장했다(Tyburnski, 2208: 106-107). 이를 위해선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새로운 산업생산방식과 생태기술이 요구된다. 즉 대체에너지 육성, 폐기물 절감 기술 개발, 자연파괴에 직결되는 재개발사업 규제와 건축의 그린화,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에 생태세 부과, 전차, 철도 중심의 생태친화적 교통정책 강화, 유기농, 자연농 등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등 탈성장과 질적 성숙의 발전전략이 필히 요구된다.

셋째, 자발적 자연보전을 위한 생태미학적 요소 중시와 생태-미학적 가치의 통합교육을 통한 생태관료 육성에도 시사점을 준다. Leopold는 농장생활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탄복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직접적 체험이 인간의 세계관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한다. Leopold는 무엇이 경제적으로 편리한가의 관점보다는 윤리, 미학적으로 합당한가라는 관점에서 태도 변화도 강조했는데(*SAC*, 262), 그의 이런 성향과 태도 중시는 생태-미학가치의 통합교육을 통한 생태관료 육성에도 시사점을 준다.

자연의 심미적 추구는 자연존중, 자연에의 감사 등 사람의 성품을 전제한다. 미적 추구를 통한 자발적 보전행위는 의무감, 책임감에 의해 수행되는 도덕적 행위와는 다르다. 자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이기심의 포기과 희생은 장기적으론 위험하다. 자연보전을 자기사랑으로 이해할 경우 즐거운 감정과 자발적 배려 등 자연과의 진정한 일체화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도덕, 법의 준수보다는 사람의 성향과 태도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면 생태윤리가 보다 자연스럽게 수용된다(노회정, 2013: 67-68). 따라서 생태가치와 미학적 가치를 통합한 자연미학(Saito, 2002) 등 공무원의 미학적 감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생태윤리 실천을 위한 장소윤리로서 생명지역주의의 중요성과 행정구역 개편 시 그것을 응용한 생활 정주(定住)권의 재조명 필요성도 시사받을 수 있다. Leopold는 “우리는 보거나 느끼거나 직접 사랑하거나 믿는 것에 대해서만 윤리적”이라 말했다(*SAC*, 251). 그는 농장생활을 통해 인디언처럼 한 지역에서 오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생태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태지역주의적 사고를 보여줬다(김원중, 2010: 14). 실제로 생태계는 우리가 구체적 장소와 직접 결합되기 전엔 실체가 없는 추상물에 불과하기 쉽다. 따라서 인간의 장소윤리는 생명지역(bio-region) 같은 제한적인 곳에서 가능하다. 생명지역은 인간이 임의로 구획한 것이 아니라 식물상, 수계(水界), 기후, 토양, 지형 같은 자연조건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인간정주 체계이다. 이는 우리 삶의 터전이 정치적 경계가 아니라 생태계의 지리적 자연경계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소윤리로서 생명지역주의가 대두한다(Sale, 1985; 송명규, 2004:

212). 우리는 땅에 다시 정주(定住)하기 위해 장소감을 조속히 되찾아야 하며 그 땅에서 본래의 의미대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Leopold처럼 인위적 경계를 걷어내고¹⁰⁾ 우리의 장소를 발견해 그것을 가꾸기 위한 새로운 삶 속으로 파헤쳐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장소의 자연적 배치에 따라 우리들 삶의 경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근대국가 내의 정치적 경계는 너무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다. 생명지역은 *regia* (territory of life)뿐 아니라 *regere*(rule of govern)이므로, 생명지역주의는 생명에 의한 통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입법부에 의해 그어진 정치행정적 구획이 아니라 주변 자연의 특징을 심분 반영하고 그런 자연의 이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생명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Berthold-Bond, 2000: 10-12). 그렇다면 행정 효율성이란 잣대의 결과물인 인위적 국토경계를 지양하고, 옛부터 내려오는 지리적 자연경계를 되살려내 국민생활 영역을 생명지역에 일치시키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정주생활의 기본단위를 의미하는 생활 정주권 개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향후엔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재편되어, 종래의 인위적 구획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장소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이 생태윤리 실천의 장소기반으로서 더욱 요구된다.

다섯째, 생태계 관리에서 지역주민의 시공간지식(time and space knowledge)을 활용하기 위한 녹색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알려준다. 생태계 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고유의 야생자원과 생태적 특징에 대한 생생한 시공간지식을 가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Leuenberger & Bartle, 2009: 34). 이를 위해선 Leopold의 의견처럼 땅 소유자인 민의 적극적 참여가 긴요하다. 실제로 EU의 보존-복원정책인 Natura 2000은 집행과정에서 소속국가들 내의 농민, 어민, 임업자 및 지역 거주자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그래서 EU 소속정부들은 중앙 집권적 접근을 포기하고 상호작용적 거버넌스로 선회했다(Keulartz, 2009: 447).

10) “토지대장이 있건 없건 새벽에 내가 걸을 수 있는 땅은 모두 나만의 소유이다. 여명은 권리 증이나 지도엔 표시되지 않은 넓은 공간을 안다. 햇살이 나오면 세상은 다시 군 서기가 아는 세속적 차원으로 축소된다”란 Leopold의 말이 그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SAC, 44-47).

즉 공공상당, 심의민주주의, 상호작용적 협치가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정책산출의 정당성 확보와 정책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이도형, 2012).

V. 맺음글

이 글에선 공리주의 산림공무원이었던 Leopold가 오랜 자연체험과 생태학 공부 및 다양한 보전활동을 통해, 도구적 자연관과 환경개량주의에서 벗어나 자연에까지 윤리를 확장하며 대지윤리라는 생태윤리를 수용하게 된 그의 인식전환 과정과 그가 정립한 대지윤리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그의 자연체험과 갈등극복경험을 공유, 학습하는 전략을 통해 생태윤리 수용의 보편적 필요성을 이해했다. 그의 생애와 대지윤리가 행정학에 주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론적, 관계론적 관점에서 인간서식처인 생태계의 중요성을 설명해 낸 그의 대지공동체 인식에서 관계성을 생태계 관리의 기본가정으로 삼아야 할 공무원 생태윤리의 명확한 수용논거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대지윤리 분석을 통해 적극적 생태윤리의 이념기반인 보전,복원 규범을 찾아내고 이를 탈발전이론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자발적 자연보전을 위한 생태미학적 요소의 중요성과 이를 응용한 생태-미학적 가치의 통합교육을 생태관료 육성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넷째, 적극적 생태윤리의 장소윤리로서 생명지역주의를 응용한 생활정주권의 재조명 필요성도 시사해 준다. 다섯째, 생태계 관리에서 지역주민의 시공간 지식을 활용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알려준다.

■ 참고문헌

- Alroe, H. F. & Kristensen, E. S. 2003. "Toward a Systemic Ethic: In Search of an Ethical Basis for Sustainability and Precaution." *Environmental Ethics*, 25(1): 59-78.
- Barry, J. 1999. *Rethinking Green Politics: Nature, Virtue & Progress*. London: Sage Pub..
- Berthold-Bond, D. 2000. "The Ethics of Place: Reflections on Bio-regionalism." *Environmental Ethics*, 22(1): 5-22.
- Callicott, J. B. 1999. *Beyond the Land Ethic: More Essays in Environmental Ethic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awley, R. 2001. "Everything is Hitched to Everything Else: Environmental Governmentality and Legitimacy."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3(1): 83-98.
- Curry, P. 2006. *Ecological Ethics: An Introduction*. Polity Press.
- Davis, W. H. 1991. "The Land Must Live." in K.S. Shrader-Frechette(ed.). *Environmental Ethics, 2nd ed.* CA. Boxwood Press.
- Dunlap, R. E. 1994. "The Nature and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 Freemuth, J. 2001. "Biocentric Public Administration: Just Another Wolf in Sheep's Clothing."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3(1): 53-66.
- Jonas, H. 1984.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In Search of Ethics for the Technological 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ulartz, J. 2009. "European Natur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olicy-Problems and Perspectives." *Restoration Ecology*, 17(4): 446-450.
- Lai, K. L. 2003. "Conceptual Foundations: for Environmental Ethics: A Daoism Perspective." *Environmental Ethics*, 25(3): 247-266.
- Leopold, A. 1949. *A Sand County Almanac with Essays on Conservation from Round River*. Oxford University Press.
- Leuenberger, D. Z. & Bartle, J. R. (2009). *Sustainable Develop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Armonk, N. Y.: M. E. Sharpe.
- Luton, L. S. 2001. "Pleistocene Public Administration: The Import of Paul Shepard."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3(1): 67-82.
- Nassauer, J. I. 1997. "Cultural Sustainability." In J. Nassauer(ed.), *Placing Nature*. Washington,

- D.C.: Island Press.
- Parkin, J. 1994. *Public Management: Technology, Democracy and Organization Reform*. Aldershot: Avebury.
- Saito, Y. 2002. "Ecological Design: Promises and Challenges." *Environmental Ethics*, 24: 243-261.
- Swart, J. A. Windt, H. Keulartz, J. 2001. "Valuation of Nature i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Restoration Ecology*, 9(2): 230-238.
- Taylor, P. 1986. *Respect for Na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imney, M. 2001. "Eco-nomics: Toward a Theory of Value for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3(1): 25-38.
- Tyburski, W. 2008. "Origin and Development of Ecological Philosophy and Environmental Ethics and Their Impact on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vol.16: 100-108.
- Desjardins(김명식 역). 1999. 《환경윤리》. 서울: 자작나무.
- Lorbiecki(작은우주 역). 2004. 《알도 레오폴드의 야생의 푸른 불꽃》. 서울: 달팽이.
- Odum(이도원 외 공역). 2001. 《생태학》. 서울: 사이언스 북스.
- Wuketits(김영철 역). 1999. 《사회생물학 논쟁: 유전자인가 문화인가》. 서울: 사이언스 북스.
- 강문규. 1997. "개발사상의 변천과 한국의 사회발전."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편. 《인간을 위한 사회발전운동》. 서울: 개마서원.
- 김용환. 2012. "환경문제와 인간중심적 생태철학: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자원의 관리." 《인문과학연구》, 36: 351-372.
- 김원중. 2010. "대지윤리의 안과 밖: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 《현대영어 영문학》 54(1): 1-25.
- 김일방. 2003. "알도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론 비판." 《철학연구》, 86: 47-71.
- 노희정. 2013. "생태학적 자아의 정립과 생태학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환경철학》, 16: 61-80.
-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서울: 아르케.
- 박의준. 2008. "20세기 서구 인간과 환경에 관한 논의." 《인간,환경,미래》, 1: 157-188.
- 박이문. 2002. 《환경철학》. 서울: 미다스 북스.
- 송명규. 1998.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윤리." 《환경정책》, 6(1): 39-71
- _____. 2004. 《현대 생태사상의 이해》. 서울: 따님.

- 윤혜진. 2007. “알도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의 철학적 기초” 《범한철학》, 46: 193-217.
- 이도형. 2011. “공무원 생태윤리 확립전략: 윤리범주화와 전제조건.” 《정부학연구》, 17(3): 79-109.
- _____. 2012. 《생태주의 행정철학: 생태관료 육성의 철학적 기반을 찾아서》. 파주: 이담북스
- 이정석. 2012. “생태계 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의사결정과 그 심리.” 《환경정책연구》, 11(3): 3-24.
- 정규호. 2005. “정치생태학, 생태적 상상력과 급진적 실천의 결합.” 데이비드 빌 외 편, 《정치생태학》. 서울: 당대.
- 조경식. 2005.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의미론.” 국중광, 박설호 편, 《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조명래. 2003. “개발주의 정부의 반녹색성.” 《계간 사상》, 겨울호.
- 한면희. 2007. “생태주의 이념과 현황 그리고 전망.” UNEP 한국위원회 엮음, 《초록눈으로 세상읽기: 환경의 학제적 이해》. 서울: 한울.